

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
(변경인가 신청서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뒤쪽참조
------	------	------	------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유형	[]설치계획, []설치인가, []변경인가		
신청인 (대표자)	명칭	설립일	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 내용	명칭		
	목적		
	위치		
	전화번호		
	법인 정관 ※ 법인 정관 내용으로 같음함		
	학칙 ※ 학칙 내용으로 같음함		
	재정운영상태 ※ 현재 재정운영 현황표로 같음함		
	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 ※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로 같음함		
	교육·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 ※ 현재 교육·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로 같음함		
변경 내용	전환개교 예정일		
	변경내용 ※ 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작성함(별첨 작성 가능)		
변경 내용	변경사유 ※ 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작성함(별첨 작성 가능)		

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·제5항, 제38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(변경인가)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학칙 1부 2. 재정운영 현황표 1부 3.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 1부 4. 교육·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표 1부 5. 향후 2년간 교육·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 1부 6.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1부 7. 교원확보 계획서 1부 8.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9. 위치도 1부 10.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11.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※ 변경인가 신청시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함
처리기간	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(단,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지적도 2.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